ITS 사업시행지침

- 차량검지기(VDS) 성능평가 -

2013. 4.

국 토 교 통 부

ITS 사업시행지침 - 차량검지기(VDS) 성능평가 -

제1장 일반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지능형교통체계(이하 'ITS'라 한다)에 사용되는 차량검지기 (VDS: Vehicle Detection System) 기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교통체계지능화사업 사업"(이하 "ITS 사업"이라 한다)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,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2. "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"(이하 "ITS 사업시행자"라 한다)라 함은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차량검지기"(Vehicle Detection System)(이하 "VDS"이라 한다)라 함은 교통량, 속도, 점유율 등의 교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장비를 말한다.
- 4. "성능평가"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의거, ITS 사업시행자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, 시스템,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를 평가·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ITS 성능평가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"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86조제4항에 따라, 지능형교통체계 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기관을 말한다.
- 6. "평가대상장비"라 함은 ITS 성능평가를 받아야 할 ITS 장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.

7. "기준값"이라 함은 교통량, 속도 등 평가대상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.

- 8. "평가기준장비"라 함은 평가대상장비의 성능 판단을 위한 기준값을 수집하는 장비를 말한다.
- 9. "검지영역"이라 함은 VDS가 차량을 검지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종료하는 지점까지 영역을 말한다.

10. "분석단위시간"이라 함은 해당 장비로부터 얻어진 값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분한 단위시간을 말한다.

제3조(성능평가 종류) ① ITS 사업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축 및 운영중인 VDS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. 또한, 도로 공사 및 선형변경 등으로 인해 VDS의 위치가 이동되거나 검지영역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성능평가는 ITS 사업 준공 전에 현장에 설치된 ITS 장비에 대한 성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가(이하 "준공평가"라 한다)와 기 구축 운영 중인 ITS 장비가 노후나 도로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능수준저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평가(이하 "정기평가"라 한다)로 구분한다.

제4조(성능평가 방법) ① VDS 준공평가 및 정기평가 항목은 교통량, 속도로 하고, 각 항목별 평가척도는 "100(%) — 평균절대오차백분율(MAPE)"을 사용하며, 평가결과는 제8조의 성능기준으로 제시한다.

$$MAPE(\%) = \frac{\sum_{i=1}^{n} \frac{|Y_{i} - X_{i}|}{Y_{i}}}{n} \times 100$$

여기서, Yi: i번째 분석단위시간의 기준값

 X_{i} : i번째 분석단위시간의 평가대상장비 측정값

n: 분석단위시간 개수

기준값 및 측정값의 경우, 교통량 : 분석단위시간당 측정된 차량의 합속도 : 분석단위시간당 측정된 차량의 속도를 산술평균한 값

- ② 현장에 설치된 VDS의 준공평가 및 정기평가 적합기준은 제8조에 제시된 성능기준 중 상급 이상으로 한다. 단, 특수한 지역 및 교통류 특성에 따른 교통정보의 효율적수집을 위하여 상급 미만의 검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품질인증등급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.
- ③ 준공평가 및 정기평가는 해당 VDS가 설치된 도로의 전체 차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현장 여건, 평가기준장비 사양 등에 따라 방향별 1개 차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.
- ④ 준공평가 및 정기평가는 주간(일출 30분후 일몰 30분전), 야간(일몰 30분후 일출 30분전) 각각에 대하여 1시간(최소 200대 이상)동안 수행하되 분석단위시간은 5분으로 한다.
- ⑤ 준공평가는 ITS 사업시 설치되는 모든 VDS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야간에 한하여는 전체 장비 중 무작위 20%를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⑥ 정기평가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모든 VDS를 대상으로 하며, 2년 마다 수행하되, 1년단위로 총 평가 대상장비의 50%를 추출하여 윤번제로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야간에 한하여는 해당 년도 평가 대상장비의 20%를 무작위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, 루프검지기와 같이 날씨, 조도 등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VDS의 경우 주간에 대해서만 준공평가 및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재평가) ① 준공평가 및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합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, 준공평가는 해당 사업 준공 전에, 정기평가는 당해 연도내에 해당 장비에 대한 교정, 수리 및 교체를 실시한 후 재평가를 수행한다. 단, 정기평가의 경우 평가

시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까지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재평가 수행에도 불구하고 적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,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 (평가기준장비) ① ITS 사업시행자는 준공평가 및 정기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기준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장비를 평가할 수 있다.

② 평가기준장비는 평가대상장비 검지영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량, 속도 등의 자료를 분석단위시간별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최상급이상의 성능이어야 하며,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영상자료 수집장치를 포함하거나 병행설치 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7조 (경비 등) ① 준공평가의 경비는 ITS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, 불합격시의 재평가비용은 해당 ITS 사업 시공자가 부담한다.

② 정기평가의 경비는 ITS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, 불합격시의 재평가비용은 하자 보수기간이내에는 ITS 사업 시공자가,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해당 ITS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불합격 원인에 따라 경비 부담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.

제8조(성능기준) 성능평가의 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	평가항목	교통량	속도	
	최상급	≥95 %	≥95 %	
평가	상급	≥90 %	≥90 %	
등급	중급	≥80 %	≥80 %	
	중하급	< 80 %	< 80 %	

제9조(성능평가 대행) ① ITS 사업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제3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전담기관에 준공평가 및 정기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ITS 사업시행자는 제10조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라 전담

기관의 장이 산정한 경비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② ITS 사업시행자가 전담기관에 평가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의 서식에 따라 성능평가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전담기관은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능평가 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
- ③ 전담기관은 원활한 ITS 성능평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 업무 절차, 성능평가 실격처리 기준 등 성능평가 대행과 관련된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성능평가 경비 산정기준)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대행경비에 대한 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.

- 1. 대행경비는 인건비, 직접경비, 일반관리비로 구성
- 2. 인건비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음

인건비 = ∑기술자 등급별 소요인원×등급별 일일노임단가

	구분	특급기술자	중급기술자	초급기술자
소요인원	기본 1식(주간)	0.5명	3.4명	2.4명
	1식 추가당(주간)	-	2.9명	1.9명

단, 기술자 등급별 일일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홍협회가 매년 공표하는 단가 적용

- 3. 직접경비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, 장비 수량 등에 따라 항목별로 경비 산정
- 여비 : 현장 출장 여비(공무원 여비규정 적용), 차량임차비, 연료비, 톨게이트비 등
- · 소모품비 : 각종 사무용품, 컴퓨터 등 전산용품 및 평가시 소요되는 소모품비 등
- · 평가기준장비 점검 및 수리수선비 : 기준장비 점검 비용, 수리비용 등
- · 통신비 : 휴대폰, 유선전화 등 각종 유·무선 통신비
- · 기타 경비 : 그 외 기타 경비
- 4. 일반관리비는 (인건비+직접경비)의 5% 이내에서 산정

제11조(성능평가 수행시 안전관리) ITS 사업시행자 또는 전담기관이 성능평가를 수행할 때는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 등을 수립 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 이 시행지침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04.11 개정)

① 이 시행지침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성능평가 신청서

		ITS 성능학	경가 신청서			
	기관명					
신 청	대표자	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(🕆)
인	담당자		전화/팩스			
	E-mail		희망평가일			
신:	청종류	□ 준공평가 □ 정기평가	□ 기타()			
	가장비 및 가항목					
2. <a>3 . <a>3 . <a>3 .	성능평가 평가대상	등록증 사본 1부 경비 납입증명서 1부 장비현황 1부 장비 모델명, 구성도 1부 위와 같이 성능 편	령가를 신청합니다.			
			년	월	일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		성능평가전딤	기관의 장 구	비하		

[별지 제2호서식] VDS 성능평가 성적서

(성능평가 종류명) 성적서				시험번호				
(808/15T8)8AM				페이지 () /	(총) 페	이지	
			·					
① 의뢰기관	}							
• 기관 ¹								
• 주 <i>:</i>								
' - ② 측정기	- .							
	: 차량검지	7](VDS)						
	회사 및 형선	, ,						
		ㄱ · D 및 설치위치 :						
장비 I	D		설치위	위치 			비고	
③ 평가결과	}							
	주간			야간				
그별		수산			O	rኂ		
구분	교통량(%)	, –	등급	교통량(%)	등급	속도(%)	등급	
구분 평가결과	교통량(%)	, –	등급	교통량(%)		· –	등급	
평가결과	, ,	, –		, ,	등급	속도(%)		
평가결과	, ,	등급 속도(%)		, ,	등급	속도(%)		
평가결과	전체 차로에	등급 속도(%)	이고 속도는	, ,	등급 에 대한 ^I	속도(%)		
평가결과 주) 교통량은	전체 차로에	등급 속도(%) 대한 평가결과의 평균값	이고 속도는	, ,	등급 에 대한 ^I	속도(%) 평가결과의 평		
평가결과 주) 교통량은	전체 차로에	등급 속도(%) 대한 평가결과의 평균값	이고 속도는	, ,	등급 에 대한 ^I	속도(%) 평가결과의 평		
평가결과 주) 교통량은 ④ 담당자 :	전체 차로에	등급 속도(%) 대한 평가결과의 평균값	·이고 속도는 명 :	: 방향별 차로	등급 에 대한 ¹	속도(%) 평가결과의 평報 전화 :		
평가결과 주) 교통량은 ④ 담당자 :	전체 차로에	등급 속도(%) 대한 평가결과의 평균값 • 성	이고 속도는 명 : 침에 따라서	· 방향별 차로 · 방향별 차로	등급 에 대한 ¹	속도(%) 평가결과의 평報 전화 :		
평가결과 주) 교통량은 ④ 담당자 :	전체 차로에	등급 속도(%) 대한 평가결과의 평균값 • 성 과는 ITS 성능평가 지	이고 속도는 명 : 침에 따라서	· 방향별 차로 · 방향별 차로	등급 에 대한 ¹	속도(%) 복도(%) 평가결과의 평報 전화 : 증명합니다.	社	
평가결과 주) 교통량은 ④ 담당자 : 평가책임	전체 차로에 위의 시험결과	등급 속도(%) 대한 평가결과의 평균값 • 성 과는 ITS 성능평가 지점 선	이고 속도는 명 : 침에 따라서 년 월 명	는 방향별 차로 명가한 성 ² 일	등급 에 대한 ¹	속도(%) 평가결과의 평報 전화 :	社	
평가결과 주) 교통량은 ④ 담당자 : 평가책임	전체 차로에 위의 시험결과	등급 속도(%) 대한 평가결과의 평균값 • 성 과는 ITS 성능평가 지	이고 속도는 명 : 침에 따라서 년 월 명	는 방향별 차로 명가한 성 ² 일	등급 에 대한 ¹	속도(%) 복도(%) 평가결과의 평報 전화 : 증명합니다.	社	